종 신 보 험 약 관

종 신 보 험 약 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1)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험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도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청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청약철회(請約撤回)를 할 수도 있읍니다.

이하에서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2)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에는 청약일(건강진단을 받은 계약은 진단일)로 부터 15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승낙의 뭉지로서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15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뭉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 (계약의 효력)

(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 1회 보험료를 받은때(건강진단을 받은 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끝냈을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2) 회사가 청약시에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날(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끝냈을때)로 소급(遡及)하여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날(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끝냈을때) 현재,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적격피보험체(適格被保險體)가 아님을 회사가 입증(立證)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제 2항의 후단(後段)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1에서 정하는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적격피보험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른 책임(피보험자의 직업이 위험한 직종으로서 가입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을 집니다.

(4)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3조 (계약 불성립시의 보험료 반환)

(1) 회사가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이하 "정기예금 금리"라 합니다)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자가 청약시에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청약일 또는 제 1회 보험료 영수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청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7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 철회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받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이 경우 반환지급기일을 경과하는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정기예금 금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제4조 (대표자의 지정)

(1)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제 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3) 계약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5조 (계약의 무효)

(1)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18세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2) 제 1항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

(1)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 보험기간(종신)중 사망하였거나 또는 생사불명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를 받았거나 회사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 : 보험가입금액 전액

2. 보험기간 안에 별표 2에서 정하는 "장해등급 분류표"상의 제1급 장해 (이하 "고도의 장해 (高度의 障害)"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때 : 보험가입금액 전액

3. 보험료 납입기간중 별표 2에서 정하는 제 2급 내지 제 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제2호 및 제3호의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 현재 상태의 진단을 기준으로 하여 장해상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7조 (배당금의 지급)

(1) 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확정배당금으로 드립니다.

(2) 회사는 이익금이 발생한 때에는 별도로 재무부 장관이 인가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이익배당금을 드립니다.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1) 회사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또는 제15조에 정한 부활일로 부터 2년이내에 자살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해침으로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장해상태가 되게하였을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리거나 그 잔액에 대한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장해상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2) 회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제 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 1항 제 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무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리며 또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가입자가 회사에 지약전 알릴 의무)

(1) 지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직장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서 사본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대신할 수 있읍니다.

(2) 지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 1항의 질문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지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지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는때

3.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계약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

(3) 제 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된 후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제11조 (보험료의 납입)

(1)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이 계약의 납입방법과 수금방법에 따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12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6조 제1항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3조 (주소변경 통지)

(1)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제 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1)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로 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猶豫期間)"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2)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계약자에게 유예기간이 끝나기 10일이전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제 1항의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3)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 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 1항의 납입기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 통지서를 제교부 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제교부일로 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 1항 및 제 2항을 적용합니다.

제15조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1) 계약이 효력상실 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 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하였을 때에는 회사가 지정한 날까지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2)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는 제 1조 제 2항, 제 2조, 제 3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6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7조 (보험금등의 지급)

(1) 회사는 제16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이내에 보험금을 드립니다.

(2)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대출이율에 의하여 지산된 금액을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3) 제 6조의 경우에 당해년도의 미납입 보험료가 있어도 이를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4)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제 8조 제 2항, 제10조 제 3항, 제14조 제 1항, 제19조 제 3항 및 제20조)은 이 계약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산합니다.(별표 3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제18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1)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7조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읍니다.

(2)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정기예금 금리로 부리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미지급 기간이 1년미만인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해당기간 정기예금 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9조 (지약내용의 변경)

(1)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읍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가입금액
4. 지약자 또는 수익자
5. 기타 지약의 내용

(2) 회사는 지약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지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 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3) 회사는 지약자가 제 1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조 제4항에 따라 이를 지약자에게 드립니다.

(4) 제약자가 제 1항 제 4호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20조 (제약자의 임의해지)

제약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전에 언제든지 제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교부 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제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드립니다.

제21조 (제약자 대출)

제약자는 이 제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 증권을 제출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읍니다.

제22조 (분쟁의 조정)

이 제약의 내용에 관하여 제약자와 회사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한국 보험공사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보험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음 수 있읍니다.

제23조 (관할법원)

이 제약에 관한 소송은 제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제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읍니다.

제24조 (보험증권의 재교부등)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무료로 보험증권의 정정, 비서, 재교부등을 해드립니다.

제25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 1)

대상이되는 불의의 사고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경제기획원 고시 제30호 1979. 1. 1. 시행)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 철도사고	E 800 - E 807
2. 자동차 교통사고	E 810 - E 819
3. 자동차 비교통사고	E 820 - E 825
4. 기타 도로교통기관사고	E 826 - E 829
5. 수상교통기관사고	E 830 - E 838
6. 항공기 및 우주교통기관사고	E 840 - E 845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7.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E 850 - E 858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1)외용약 또는 약물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등	
(2)질병의 진단, 치료의 목적	
8.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E 860 - E 869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1)세제, 유지 및 구리스, 용지, 기타의 화학물질 접촉에 의한 피부염	
(2)살모넬라(Salmonella)성 식중독	
(3)세균성(포도구균성, Botulinus균성), 기타 원인불명의 세균성 식중독	
(4)알레르기성, 식이성(음식물에 의함) 또는 중독성위장염이거나 대장염	
9. 불의의 추락	E 880 - E 888
10.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E 890 - E 899
11.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E 900 - E 909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1)과도의 고온 및 저온	(E 900 - E 901)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2)고기압, 저기압 및 기압의 변화	(E 902)
(3)여행 및 운동	(E 903)
(4)굶주림, 갈증, 불량환경노출 및 방치증의 굶주림, 갈증	(E 904)
12.기타 불의의 사고	E 916 - E 928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1)과로 및 격렬한 운동	(E 927)
13.침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E 910 - E 915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1)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삼킴장해 또는 정신신경장해 상태가 있는 사람의 음식물 흡입 또는 삼킴에 의한 막힘 및 질식	
(2)기타 물체의 흡입 또는 삼킴에 의한 막힘 및 질식	(E 912)
14.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E 870 - E 876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1)질병의 진단목적	
(2)질병의 치료목적	
15.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	E 960 - E 969
16.법적개입(다만 "처형은 제외한다")	E 970 - E 978
17.전쟁행위에 의한 상해	E 990 - E 999
18.전염병 예방법 제 2조 제 1항 제 1종에 규정한 질병	

(별표 2)

장해등급 분류표

등 급	신 체 장 해
제 1 급	1.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지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 2 급	1.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 2 부터 7 까지 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부터 7 까지 중 또는 제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4. 두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제 3 급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4 급	1. 두눈의 시력이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 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9.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제 5 급	1.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4.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5.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7.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9. 한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10.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6 급	1.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단축되었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또는 3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8.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장 해 등 급 분 류 해 설

1.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 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일상생활 동작의 제한"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간호는 필요하지 않으나, 평생토록 일상생활 동작에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시력의 뚜렷한 장해"

시력이 0.06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 ㅂ, ㅍ), 치설음(ㄴ, ㄷ, ㄹ), 구개음(ㅈ, ㅊ), 후두음(ㅇ, ㅎ)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않는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청력검사단위)로 했을때 1/6(a+2b+2c+d)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 단위) 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의 1/2이상이 결손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후각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팔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 팔목, 손목, 다리는 곱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11.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생리적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2.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

목뼈가 완전강직된경우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 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3.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원위지절간관절(첫째손가락은 말절골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첫째 손가락은 지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4.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첫째발가락은 말절골의 1/2 이상, 그외 발가락을 원위지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첫째 발가락은 지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5.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 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중 제 1급의 5,6,7,8,9 제 2급의 1,2,3, 제 3급의 8 또는 제 4급의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별표 3

해 약 환 급 금 에 시 표

* 전기납 월납기준
* 보험가입금액 : 10 만원
* 가입연령 : 40 세

(남자)

경과년도	전기납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 개월	190	0
3 개월	570	0
6 개월	1,140	0
1 년	2,280	0
1 년 9 개월	3,990	5
3 년	6,840	1,871
5 년	11,400	5,562
10 년	22,800	13,789
15 년	34,200	22,496
20 년	45,600	32,196
25 년	57,000	42,515
30 년	68,400	52,933
35 년	79,800	62,863
40 년	91,200	71,753
45 년	102,600	79,204
50 년	114,000	85,020
55 년	125,400	89,322
60 년	136,800	100,000

* 전기납 월납기준
* 보험가입금액 : 10 만원
* 가입연령 : 37 세

(남자)

경과년도	55 세 납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 개월	195	0
3 개월	585	0
6 개월	1,170	0
1 년	2,340	0
1 년 7 개월	3,705	11
3 년	7,020	2,388
5 년	11,700	6,531
10 년	23,400	16,504
15 년	35,100	28,422
18 년	42,120	37,237
20 년	42,120	40,329
25 년	42,120	48,514
30 년	42,120	57,048
35 년	42,120	65,474
40 년	42,120	73,310
45 년	42,120	80,145
50 년	42,120	85,722
55 년	42,120	89,939
60 년	42,120	92,660
63 년	42,120	100,000

(여자)

경과년도	전기납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 개월	126	0
3 개월	378	0
6 개월	756	0
1 년	1,512	0
2 년 5 개월	3,654	83
3 년	4,536	737
5 년	7,560	3,657
10 년	15,120	9,868
15 년	22,680	16,526
20 년	30,240	24,561
25 년	37,800	33,746
30 년	45,360	43,758
35 년	52,920	54,077
40 년	60,480	64,061
45 년	68,040	73,071
50 년	75,600	80,622
55 년	83,160	86,475
60 년	90,720	90,749
65 년	98,280	100,000

(여자)

경과년도	55 세 납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 개월	137	0
3 개월	411	0
6 개월	822	0
1 년	1,644	0
2 년 2 개월	3,562	949
3 년	4,932	1,096
5 년	8,220	4,335
10 년	16,440	11,808
15 년	24,660	20,643
18 년	29,592	27,225
20 년	29,592	29,912
25 년	29,592	37,387
30 년	29,592	45,779
35 년	29,592	54,733
40 년	29,592	63,737
45 년	29,592	72,217
50 년	29,592	79,649
55 년	29,592	85,689
60 년	29,592	90,224
65 년	29,592	93,308
68 년	29,592	100,000

해약환급금예시표

* 전기납 월납기준
* 보험가입금액 : 10 만원
* 가입연령 : 39 세

(남자)

경과년도	60세 납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 개월	203	0
3 개월	609	0
6 개월	1,218	0
1 년	2,436	0
1 년 7 개월	3,857	23
3 년	7,308	2,390
5 년	12,180	6,511
10 년	24,360	16,279
15 년	36,540	27,585
20 년	48,720	41,851
21 년	51,156	45,176
25 년	51,156	51,910
30 년	51,156	60,458
35 년	51,156	68,705
40 년	51,156	76,181
45 년	51,156	82,534
50 년	51,156	87,565
55 년	51,156	91,264
60 년	51,156	96,549
61 년	51,156	100,000

* 전기납 월납기준
* 보험가입금액 : 10 만원
* 가입연령 : 42 세

(남자)

경과년도	65세 납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 개월	229	0
3 개월	687	0
6 개월	1,374	0
1 년	2,748	0
1 년 6 개월	4,122	67
3 년	8,244	2,763
5 년	13,740	7,140
10 년	27,480	17,467
15 년	41,220	29,098
20 년	54,960	43,292
23 년	63,204	53,621
25 년	63,204	57,048
30 년	63,204	65,474
35 년	63,204	73,310
40 년	63,204	80,145
45 년	63,204	85,722
50 년	63,204	89,939
55 년	63,204	92,660
58 년	63,204	100,000

(여자)

경과년도	60세 납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 개월	140	0
3 개월	420	0
6 개월	840	0
1 년	1,680	0
2 년 2 개월	3,640	100
3 년	5,040	1,163
5 년	8,400	4,435
10 년	16,800	11,891
15 년	25,200	20,497
20 년	33,600	31,673
21 년	35,280	34,274
25 년	35,280	40,650
30 년	35,280	49,319
35 년	35,280	58,360
40 년	35,280	67,224
45 년	35,280	75,339
50 년	35,280	82,243
55 년	35,280	87,680
60 년	35,280	91,658
65 년	35,280	95,548
66 년	35,280	100,000

(여자)

경과년도	65세 납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 개월	156	0
3 개월	468	0
6 개월	936	0
1 년	1,872	0
1 년 11 개월	3,588	10
3 년	5,616	1,521
5 년	9,360	5,035
10 년	18,720	13,035
15 년	28,080	22,265
20 년	37,440	33,917
23 년	43,056	42,331
25 년	43,056	45,779
30 년	43,056	54,733
35 년	43,056	63,737
40 년	43,056	72,217
45 년	43,056	79,649
50 년	43,056	85,639
55 년	43,056	90,224
60 년	43,056	93,308
63 년	43,056	100,000